2019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2019 RETIREMENT PENSION PLAN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2019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한 생각
유안타증권이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3층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우편물을 E-mail로 받아보세요

우편통보지를 E-mail로 변경하는 방법

1. 온라인에서 변경

- **개인형IRP**
  홈페이지(www.myasset.com) (뱅킹/계좌/대출〉개인정보조회/변경 및 통보지관리)에서 E-mail로 변경
- **DC플랜 가입자**
  홈페이지(www.myasset.com) 에서 E-mail 주소 등록 후 퇴직연금 홈페이지(My퇴직연금〉기본정보〉
  가입자정보조회/변경)에서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2. 유선변경 (고객센터(☎1588-2600) 및 영업점)
가입자 본인 요청에 의하여 E-mail주소 등록 및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가능

Contents

2019 퇴직연금,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4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5

0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8

03. 지연이자 11

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2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13

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15

07. 수급권의 보호 15

08. 계약이전 절차 16

09. 과세체계 17

10. Q&A 22

2.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25

02. 노후설계의 중요성 25

03. 노후보장 체계 26

04. 노후자금 상세설계 26

05. 투자의 기본원칙 27

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29

07. 2019 Market Outlook 31

2019 퇴직연금,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퇴직연금 자산은 "바로 나!" 스스로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의 운용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가입자 '나 자신'입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지시)

- 일부 가입자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운용에 무관심하고, 이러한 사유 등으로 '17년 중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90% 수준에 달합니다.
- 금융회사의 역할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특히 운용상품(금융상품)의 만기 도래 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품변경 필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다 똑같다?!

DC·IRP 적립금 대부분(약 80%)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같은 원리금보장형이더라도 상품특성(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을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마이너스 수익률의 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에게 금융회사별·상품별 금리수준 등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 동일한 상품에만 단순 만기연장 운용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입자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예:연말무렵)" 나의 퇴직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 납입금액, 운용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 수준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나의 퇴직연금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IRP 납입금액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최대 11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입금액을 확인하고 추가불입 필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직급여 제도의 구성

2005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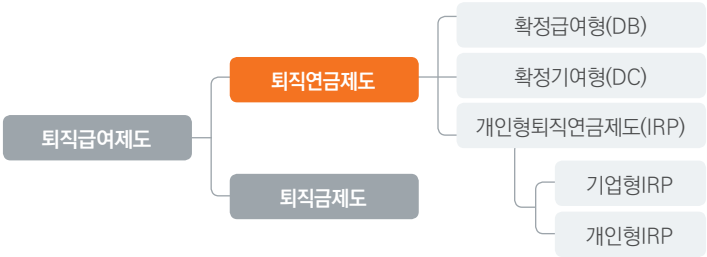

퇴직연금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제도별 특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확정기여형 퇴직금연금제도 (DC)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별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시 가입자는 부담금 및 자기 책임하에 운용한 손익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급여액을 정하는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기여액을 정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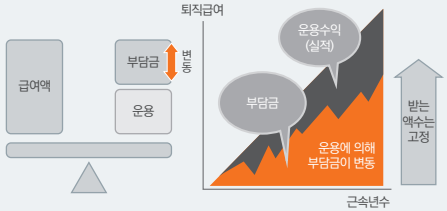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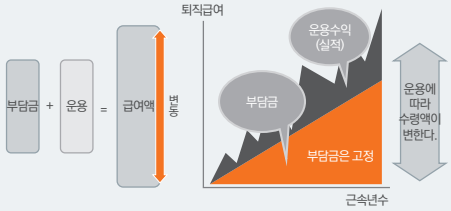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기업형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규약신고 없이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 • 개인형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입금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은퇴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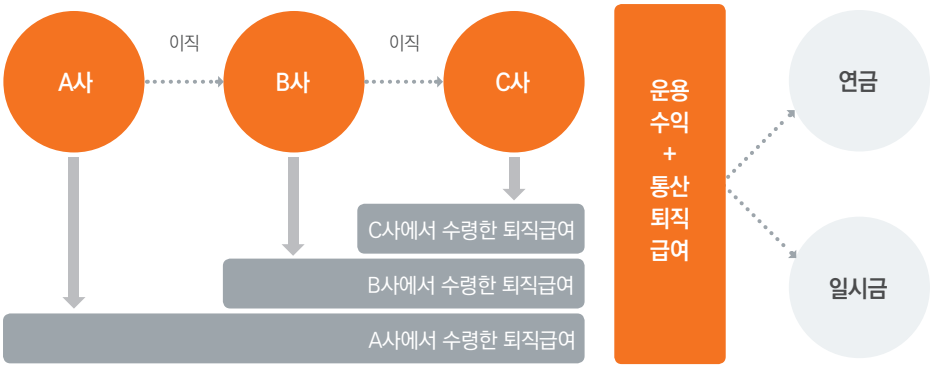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연봉 1,200만원(월100만원)에 입사 후 3년간 근무 후 퇴직 시 (매년 임금상승률 3%, 수익률 3% 가정)

[D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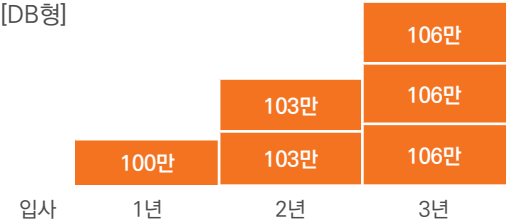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06만(임금상승분 포함) × 3 = 318만원
임금상승률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D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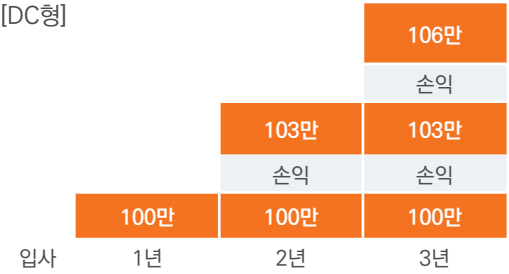

(100만+3만)+(103만+6만)+106만
= 309만원 + 9만원(투자수익금) = 318만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제도별 비교

구분		DB	DC	IRP	
				기업형	개인형
사용자부담금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 (2019년 90%)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사용자부담금 ± 운용손익		-
적립금 운용주체 및 수익귀속		사용자(기업)	가입자(근로자)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 사유 限)		
가입자부담금		불가	가능(연금계좌 합산하여 연1800만원限)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연금**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0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중도인출	**불가능**	적립금의 100%
담보제공	적립금의 50%	적립금의 50%

※당사 : 현재 담보제공 가능 상품 없음

중도인출 · 담보대출의 법정 사유 및 제출서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무주택 확인 서약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당사양식 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영수증 사본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 전 신청 시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한 사업장 근로 동안 1회 限)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구분	구비서류	비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무주택 확인 서약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당사양식 세목별과세증명서
전세금/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영수증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지급 전 신청시 잔금지급 후 신청시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요양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주1)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1)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단,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④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파산 여부 확인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파산선고문 •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하며, 면책 ·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신청불가	

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당시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을 할 수 있는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행정 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발급처** :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 · 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 · 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류」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 가족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여부 확인 있는 서류	

03 지연이자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제외)

지연이자율	■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 연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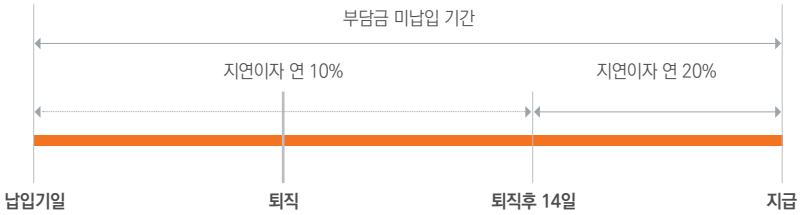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상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text{평균임금} = \frac{\text{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주1)}}{\text{3개월 동안의 총 일수}^{*\,주2)}}$$

* 주1)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금액으로 세액 공제전의 임금
* 주2) 총 일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수령 시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퇴직급여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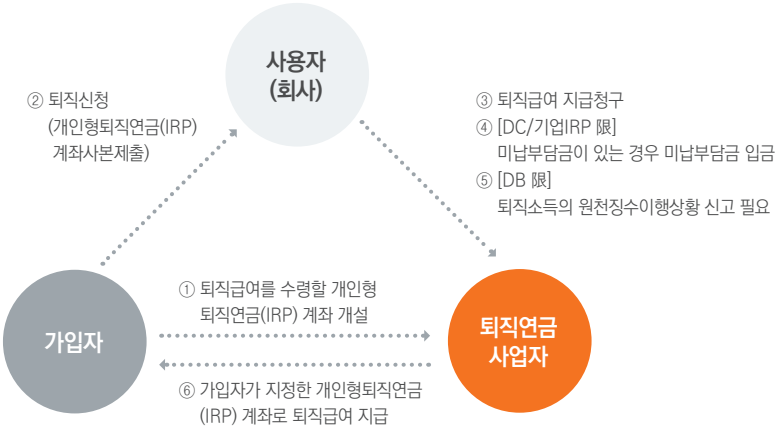

1.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개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
-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이전
- 소득자라면 누구나 계좌 개설 가능 (연금저축 포함 연1,800만원까지 개인부담금 납입 가능)
- 개인부담금 연 7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2. [퇴직의사 전달]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사본과 함께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청구]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알리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퇴직급여 지급청구서(당사 양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DB 限),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DC/기업형IRP, 임원 퇴직의 경우 限)

4. [(DC/기업IRP 限) 미납부담금 납입]

가입자(퇴직예정자)의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못한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불입된 사업주부담금+운용손익이 퇴직급여가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과세이연 신고 및 원천징수 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5. [(DB 限) 퇴직소득세신고]

퇴직급여의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인출이 발생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납부하므로, 사용자(회사)는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소득자 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확정급여형(DB)	사용자(회사)	•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이연(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이연신고) • 연금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후 신고 · 납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6.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 관련 세금을 차감 후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당사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가입자가 당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 이전시 가입자가** 원할 경우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매각 없이 그대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제도의 중단	• 회사가 일시적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이후 타 사업자에게 이전되기까지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해야 함
제도의 폐지	• 노사 합의로 폐지/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제도 폐지 •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DB/DC) 폐지신고 •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07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08 계약이전절차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 변경 → ② 계약이전 신청 → ③ 가입자정보 및 적립금 이전 → ④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 후 이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요청합니다.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09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계산구조(2016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 적용)

퇴직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퇴직소득 수준별 차등공제(100%~35%)로 전환되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했던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2016년~2019년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X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8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계산

(-) 차등공제 x 소득세율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 산출세액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01.01~ 2016.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8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20%**
2017.01.01~ 2017.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6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40%**
2018.01.01~ 2018.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4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60%**
2019.01.01~ 2019.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2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80%**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09 과세체계

참고: 종전 퇴직소득세 계산구조(2015년말까지 퇴직하는 경우 적용)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①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8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012.12.31 이전 근무분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X 소득세율

(=) 연평균산출세액 X 근속연수

2013.01.01. 이후 근무분

퇴직소득과세표준 X 5 ÷ 근속연수

(=) 환산과세표준 X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5 X 근속연수

(=) 산출세액 + (=) 산출세액

(=) 최종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퇴직소득차감납부세액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 지방소득세 별도

09 과세체계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조건의 미충족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시 가입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일시금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수령형태 / 소득의 원천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주1] 이내)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한도[주1] 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분리과세)[주2]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	이연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연금소득세(종합과세)[주3] • 70세 미만: 5.5% • 70세 ~ 80세미만: 4.4% • 80세 이상: 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손익		

※ 상기 세율은 지방세 포함 세율입니다.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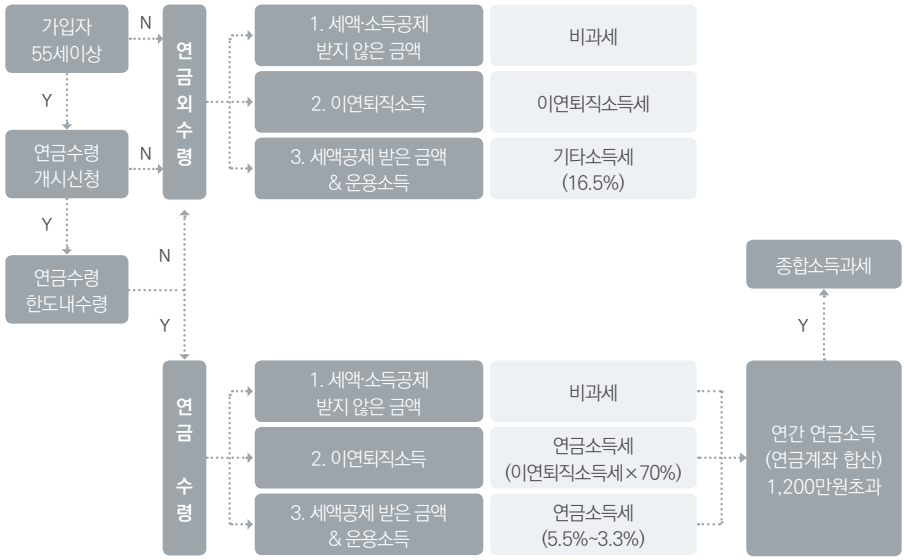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연금소득세 적용

09 과세체계

주1) 연금수령한도란 한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개시신청일)의 계좌평가액}}{\text{(11- 연금수령연차)}} \times 1.2$$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 까지 적용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주2)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3) 소득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과세 신고시 연금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구조]

연금소득 (공적연금제외)

(-)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 ×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0%

연금소득금액

산출세액

연금소득금액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 지방소득세 별도

(-)기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세율
70세미만	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세액

09 과세체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납입 · 운용시 세제혜택 〉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경우 세전 퇴직급여가 이전되어, 퇴직소득과 운용 손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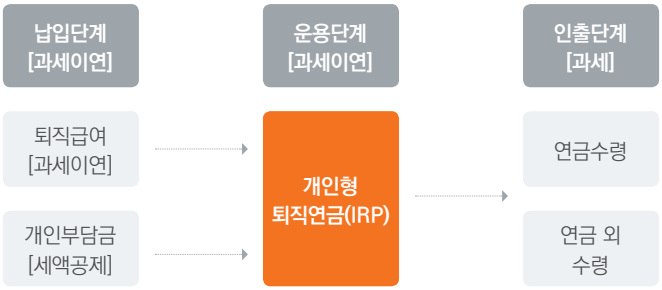

가입자부담금 납입 시 관련 세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납입한도	• DC/기업형IRP/개인형IRP: 연 1,8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 • 전금융권 합산 납입한도이며, 한도 설정 후 가입자 부담금 납입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연 700만원(연금저축 합산) •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가입자부담금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 고액연봉자(1억2천만원 초과)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퇴직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0만원가지 공제가능

10 Q&A

Q.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시 사용자(회사)는 어느 정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나요?

A. 사용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주1)]은 기준책임준비금에 법정 최소적립비율(2019~2020년: 90%, 2021년 이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재정검증"** 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사용자(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검증결과가 적립부족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1) • 최소적립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x 법정 최소적립비율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 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 법정 최소적립비율

사업연도	2012.7.26~2013	2014~2015	2016~2018	2019~2020	2021~
법정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연차에 따라 위의 법정최소적립비율보다 작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Q&A

Q.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부족 일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을 포함하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대상이나,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호]

Q. 재정건전성 검증결과 적립초과 일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검증결과	조치사항
기준책임준비금×150% 〈 보유적립금	사용자의 적립금 반환 요구시 반환가능
기준책임준비금×100% 〈 보유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150%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Q.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입자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나, 사업장 별로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할 수 있습니다.**

Q.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한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 선택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Q&A

Q. 퇴직연금 제도 도입 후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운용방법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Q.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또는 복수 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 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급여 제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의 재원은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A. 퇴직연금 재원의 운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서만 해당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며,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주와 계약 체결 시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은 실질적,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Q.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은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 이전되어, 근로자의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A.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합니다.** 즉, 퇴직소득세율이 5%이면 연금소득세율은 3.5%(5%의 70%)입니다. 이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세금이고, 발생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에는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만 69세까지 5.5%, 만 79세까지 4.4%, 이후 3.3%)를 부담합니다.

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생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맞춘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시]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생애주기	결혼기	자녀교육기	가족성숙기	노후생활기
자산관리 이슈	결혼/주택마련 자금	교육투자 자금	자녀결혼 및 은퇴자금	상속 및 의료자금
자산관리 계획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목적	자산축적	자산축적	자산관리	자산관리 및 소비
안전자산 : 위험자산	30 : 70	30 : 70	50 : 50	65 : 35
대표적 투자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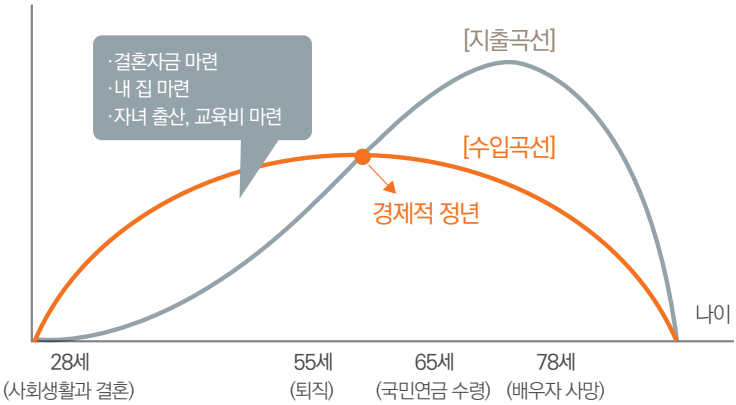

02 노후설계의 중요성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2010년 81세에서 2023년 91세로 이미 100세 시대에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은퇴기간 역시 20년에서 40년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3 노후보장 체계

경제적 정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개인의 저축, 보험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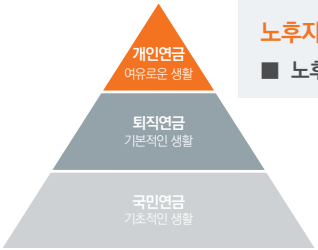

노후자금 산출방법

■ **노후자금** = 은퇴 직전 소득 X 소득대체율(60~80%) X 노후기간(20~30년)

[선진국형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04 노후보장 상세설계

노후자금 상세 설계

[STEP 1] 퇴직 후 필요한 자금과 수입원 확인하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대체율 설정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퇴직 후 필요자금을 계산합니다.

[STEP 2] 물가상승을 고려한 미래가치 계산하기

지금까지 계산한 퇴직 후 필요자금은 현재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점에 필요한 돈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STEP 3]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규모 구하기

지금까지 퇴직 첫 해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노후 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노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퇴직 후 사망까지 노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퇴직 후 노후자금을 얼마의 수익률로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4] 가지고 있는 자금 확인, 추가로 필요한 돈 계산하기

3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총 노후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수익금이 지나면서 불어날 것이고, 은퇴시점 받게 되는 퇴직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투자의 기본원칙

■ 분산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의 수단은 상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며, 고유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연관성이 적은 투자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그 매입 시기를 달리하는 분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의 분산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가격변동이 다른 여러 개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포함하는 것보다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서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 채권시장이 안 좋을 경우 주식시장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의 분산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형태로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매입하여 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낮은 가격에서 많이, 높은 가격에서 적게 매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거치식으로 매입한 경우에 비해 적립식 매입방법의 평균매입단가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 500만원 일시금 VS 정액분할 투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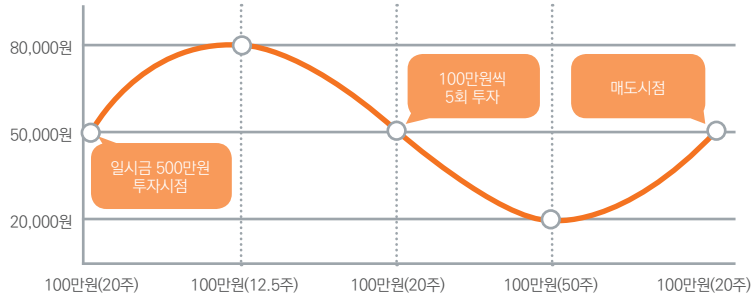

구분	투입금액	매입주수	환급금	수익률
일시금	500만원	100주	500만원	0.0%
적립식(정액분할)	100만원X5회	122.5주	613만원	22.6%

05 투자의 기본원칙

■ 원칙과 목적을 갖춘 투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목표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욕심이나 보상심리로 인하여 투자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원칙을 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타이밍보다 준비가 먼저

주변에서 소위 대박이라고 불리우는 투자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제 흐름과 투자흐름을 종합하여 봤을 때 그 후에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차를 타 투자에 실패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3가지 투자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투자위험을 대하는 성향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수단이 있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투자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운용방법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또는 매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정기간 동안 투자하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리금보장운용방법

둘째,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셋째, 첫째와 둘째 운용방법을 제외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저위험 저수익

운용방법	상품종류	비고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예금, 적금 • 최저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GIC) •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	자산관리계약을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분산요건을 갖춘 RP제외)에는 투자불가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	
그 외 (위험자산)	• 주식혼합형, 주식형 펀드 • 상장주식(DC/개인형IRP 불가) • 투자적격등급의 회사채 등	•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투자금지증권은 운용불가 •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운용

고위험 고수익

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운용방법 변경

만기도래, 투자성향 변경,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품운용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운용방법 변경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 변경: 기존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
- 투자비율 변경: 기존 보유상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후 납입할 금액(부담금)에 대한 투자비율을 변경하는 방법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하여 투자가능한도를 부여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07 2019 Market Outlook

2019 한눈에 보는 투자 Consensus

[출처: 유안타증권 종합자산관리자료「WM Guide+」2019년 1월호]

한국 GDP 성장률

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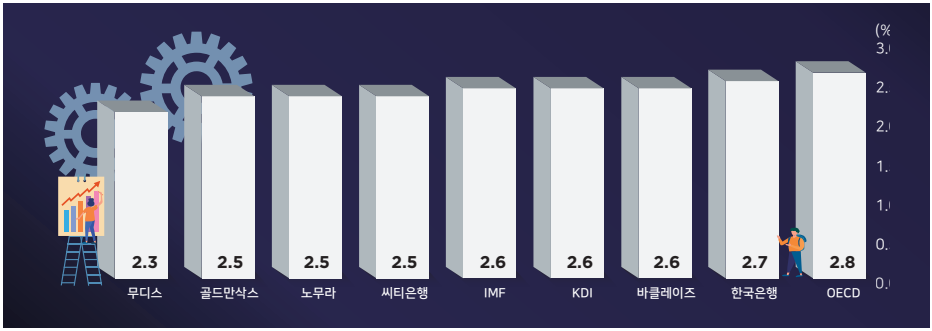

미국 GDP 성장률

2.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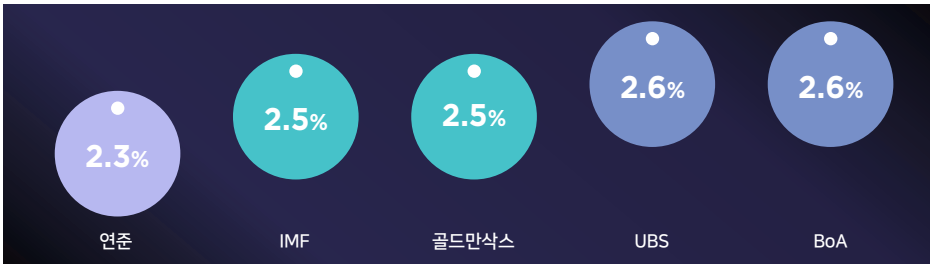

- 본 자료는 각 해당 증권사의 연간 전망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07 2019 Market Outlook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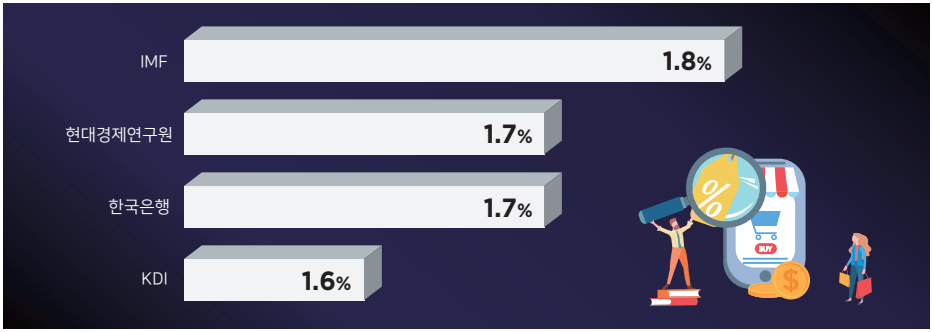

국내 실업률

3.7~3.8%

07 2019 Market Outlook

원/달러 환율 (연평균)

1,100~1,17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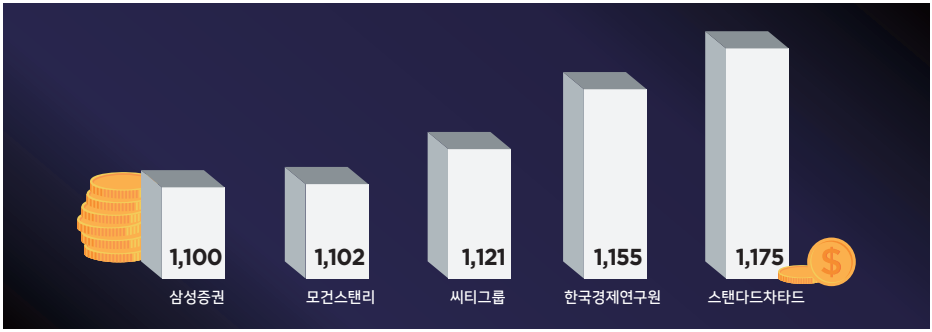

국제유가 (WTI 기준)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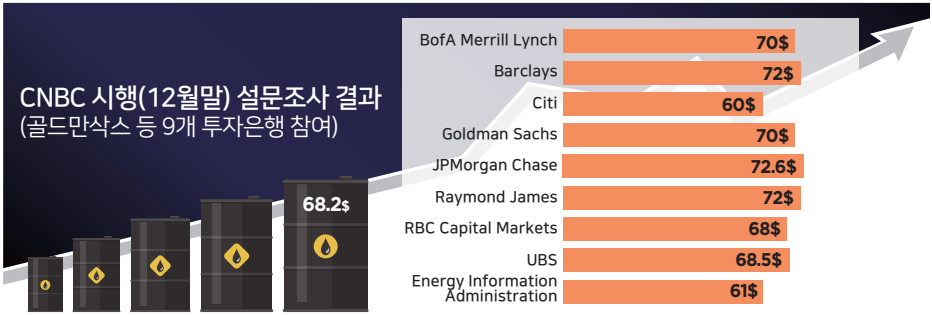

07 2019 Market Outlook

미국 금리인상

1~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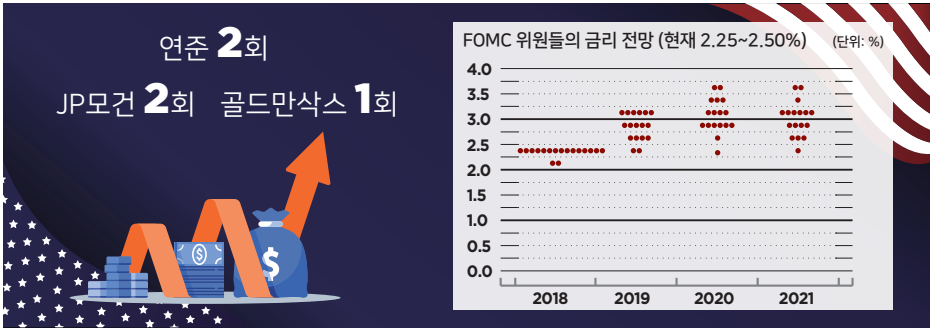

KOSPI 전망

1,900~2,400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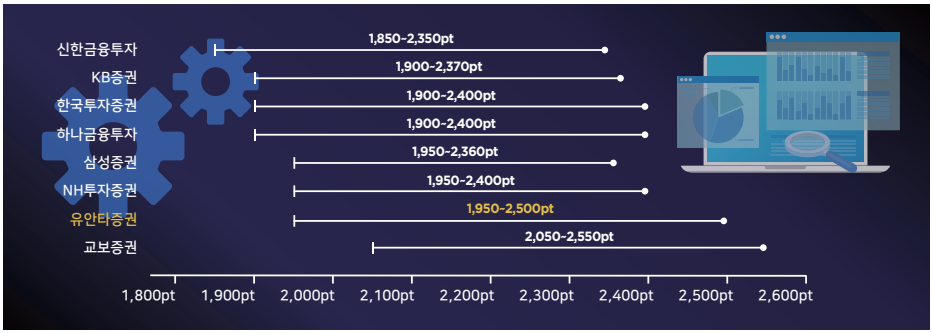

유안타 대표 PB 100인이 바라본

2019 금융시장 전망

[출처: 유안타증권 종합자산관리자료「WM Guide+」2019년 1월호]

2019년 WM Guide+ 신년특집호 발간을 맞아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시장 전망을 도출해보고자 당사 대표PB 100인의 견해를 취합하여 정리함.

- 본 자료는 당사 대표PB 100인의 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019년 거시경제 전망

국내 GDP 성장률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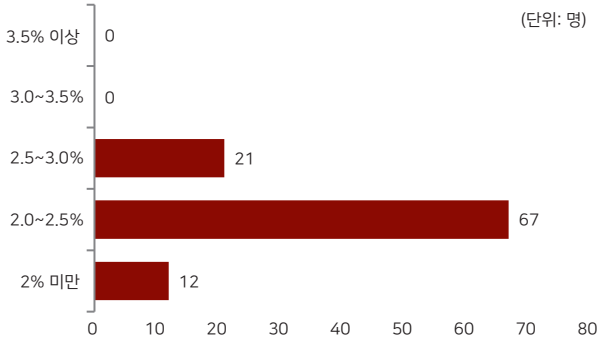

2019년에도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국내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함. 설문조사 결과 전 직원 3% 미만 성장을 예상하면서, 2.5~3.0% 21명, 2.0~2.5% 67명, 2% 미만 성장도 12명 예상함. 국내 기관의 2019년 국내 GDP 성장률 전망은 2.6~2.8%로 올해 성장치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KDI 2.6%, 한국은행 2.7%, 정부 2.8%), 해외 IB등 여러기관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2.3~2.6%로 이보다도 다소 낮게 전망함(무디스 2.3%, 골드만삭스 2.5%, 씨티은행 2.5%, IMF 2.6%, 바클레이즈 2.6%).

2019년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는 응답자의 42%가 미·중 무역분쟁 지속화를 지목하였으며, 실업률 상승 등 성장동력 저하가 25%, 한·미 금리격차 확대가 13%로 그 뒤를 이음.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52명이 현재 상황이 지속되어 당분간 타결이 힘들 것으로 예측함.

2019 국내 주식시장 위험 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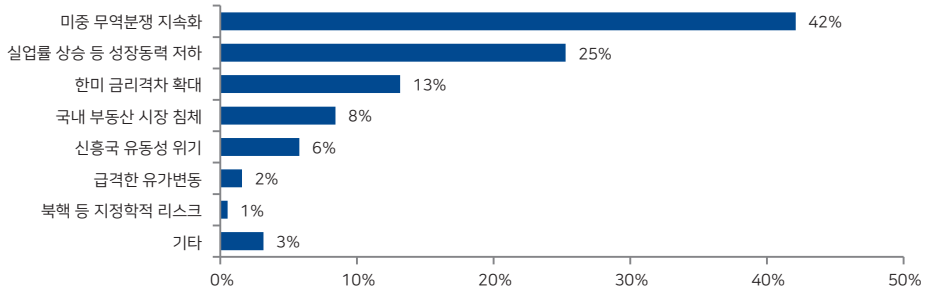

07 2019 Market Outlook

국제유가(WTI) 및 원달러 환율 전망

국제유가

50~60$

환율

1,100~1,150₩

2019년 국제유가(WTI)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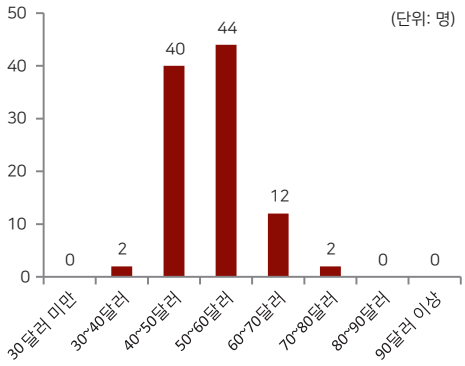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2018년 들어 꾸준히 상승하다가 10월 이후 급락했으며,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야기시킨 요인으로는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및 OPEC의 감산 완화 합의,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 한시적 허용 등이 원인이었음. **2019년 국제유가(WTI)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50~60달러 수준이 응답자의 44%로 가장 많았고, 40~50달러 수준 또한 40%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40~60달러 수준으로 예측하였음.** 향후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산에 합의한 OPEC 국가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임.

2019년 원달러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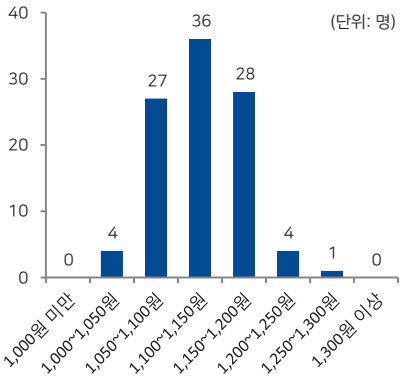

2018년 외환시장은 증시와는 달리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거래를 마감함. 상반기까지 미국 금리인상과 북핵리스크 완화가 맞물리며 1,0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계속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짐. **2019년 환율 전망으로는 현재 환율 수준인 1,100~1,150원대로 가장 많은 36명이 예측하였고,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음.** 2019년에도 지속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혼재속에 특정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2019년 자산배분 전략

2019 가장 선호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은?

1위 중국

2위 한국

3위 아세안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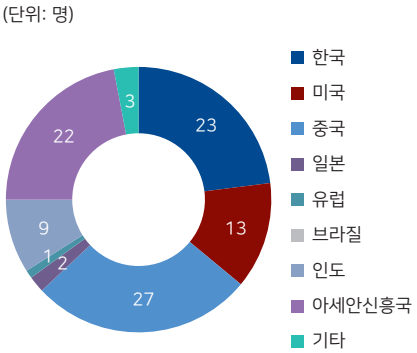

영업직원 100인이 꼽은 2019년도 최선호 글로벌 주식시장은 중국으로, 2018년 고점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을 두고 저평가 상황의 투자 기회로 생각함. 미·중 무역분쟁 또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 시장은 작년 설문조사때 가장 선호했던 시장으로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음. 한편 이에 비해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선진국은 경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신흥국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있었음.

한편 2019년도 가장 선호하는 자산군으로는 국내주식과 이머징주식이 나란히 1, 2위로 꼽혔는데 이는 앞서 응답한 최선호 글로벌 주식시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선진국주식의 경우 앞선 조사결과와 같이 선진국 경기 조정을 예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으며, 글로벌 경기를 불확실하게 예측하면서 헤지펀드 및 채권 자산군을 선택한 비중도 약 30%에 달함. 이와 같이 2019년 증시는 불확실성 속에 기대가 혼재하는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19 가장 선호하는 자산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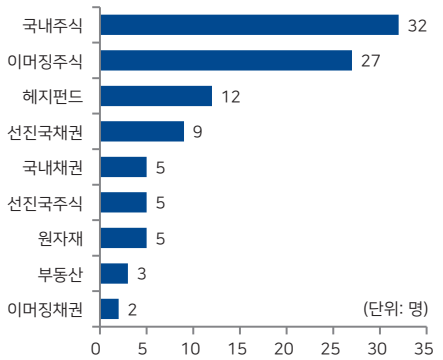

07 2019 Market Outlook

2019년에도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호 채권자산을 조사해본 결과 **약 31%가 비교적 안전자산인 선진국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함.** 한편 이머징채권과 글로벌 하이일드채권에도 각각 25명, 19명이 선택하여 불확실한 변동성 속에 투자 기회를 찾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냄.

2019 가장 선호하는 채권자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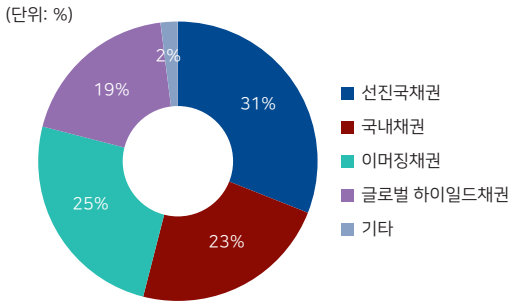

2019 가장 선호하는 대체투자 자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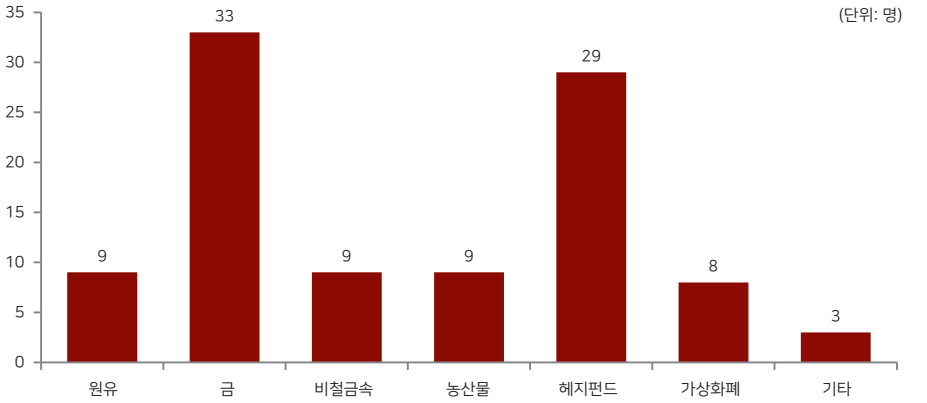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33명이 금을 선택하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으며, 2018년도 최선호 대체투자 자산이었던 헤지펀드 또한 29명으로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보임. 금은 작년 10명 선택에 불과했으나 올해 33명으로 가장 큰 반전을 보이며 불확실한 시장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미중 무역분쟁이 가장 큰 이슈로 지목되었으며, 미국 경기둔화 및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곧 미 트럼프 행정부 전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앞선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전개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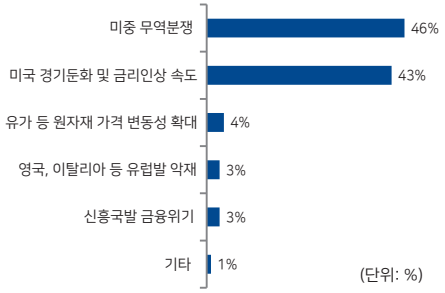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

역대급 시장 규제로 불리는 9.13 대책과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 2019년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약 80% 가까이 차지했으며, 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전망에도 반영되어 **과반수 이상이 2019년에는 3% 미만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이는 2018년 17.8% 가량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기대치가 크게 낮아진 것임. 또한 2017년 시행되었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41%가 정책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비해 2018년 정책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할 것으로 예측함.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임.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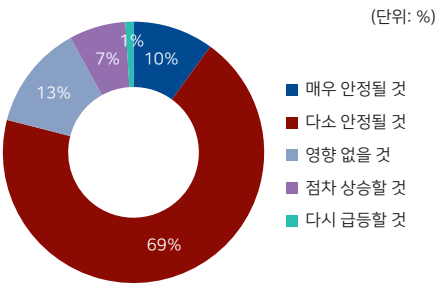

2019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예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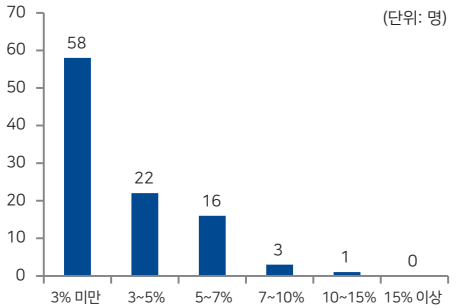

2019년 주식 투자전략

국내시장 전망

KOSPI

2,200~2,300pt

KOSDAQ

700~800pt

2019년에도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함. 설문조사 결과 **코스피 고점을 2,200~2,300pt, 코스닥 고점을 700~800pt로 작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코스피의 경우 2,300pt 이상을 예상하는 직원도 38명이나 되면서, 앞선 가장 선호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 증시를 두 번째로 선호한 것에 대한 기대치를 드러냄. 또한 향후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가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70%가 가까운 미래(1~2년)에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감을 보임.

KOSPI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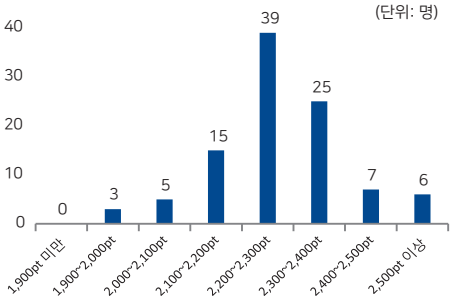

KOSDAQ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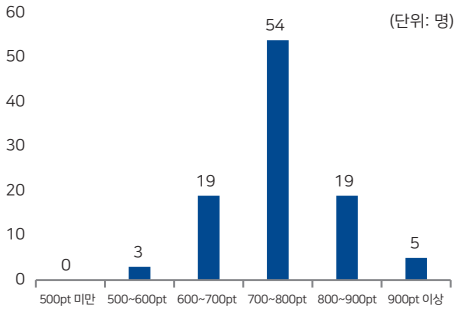

2019 주목해야할 투자 Keyword

바이오
5G
대북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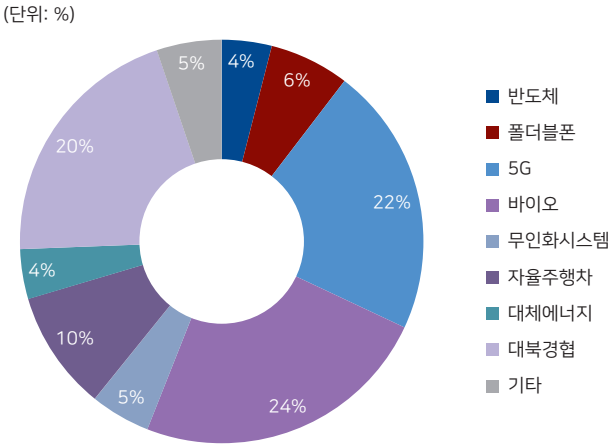

2019년 가장 주목해야할 키워드로는 바이오와 5G, 대북경협이 각각 20% 이상 차지하며 핵심 트렌드로 꼽혔음. 자율주행차, 폴더블폰은 각각 10%, 6%의 선택을 받아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예상함. 바이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필두로 2018년 초반 뜨겁게 달아오르다 회계이슈로 조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핵심 테마로 꼽힘. 경협주 역시 2018년의 핵심 키워드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2019 국내 주식시장 최선호 업종은?

제약/바이오

2019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핵심 키워드 조사결과와 같이 제약/바이오가 꼽혔음. 이어 5G 관련 업종인 통신/IT와 대북경협관련 건설/기계 업종도 상위권에 자리함. 한편 LNG 수요 증가에 따라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조선주와 BTS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엔터주 또한 각광받는 섹터로 꼽힘. 반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비선호하는 업종으로 선정되었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금융 또한 비선호 업종으로 꼽힘.

2019 국내증시 선호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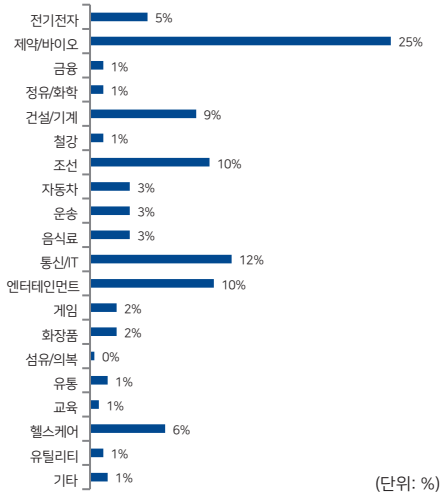

2019 국내증시 비선호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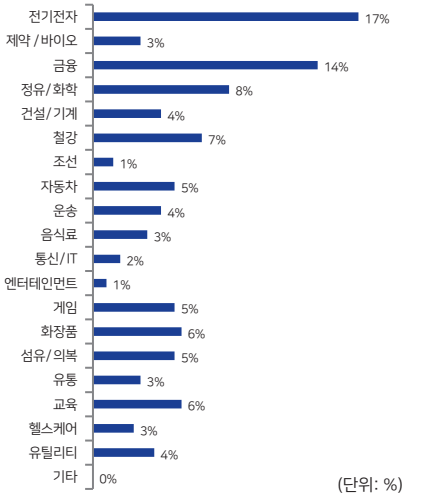

07 2019 Market Outlook

2019 해외 주식시장 전망

미국

2,600~2,800pt

중국

2,600~2,900pt

2019년 해외 주식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았음. 영업직원 100명 중 38명이 S&P500 고점을 2,600~2,800pt로 예측하였고, 26명이 이보다 낮은 2,400~2,600pt에서 고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면서 미국 시장이 2018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봄. 중국 시장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는데, 100명 중 40명이 상해종합지수 고점이 2,600~2,900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았음. 다만 2018년도 증시 낙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100명 중 30명은 고점을 2,900~3,200pt 수준으로 제시함.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치를 예상한 것으로 미루어볼때,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대외 변수에 의해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2019 미국시장전망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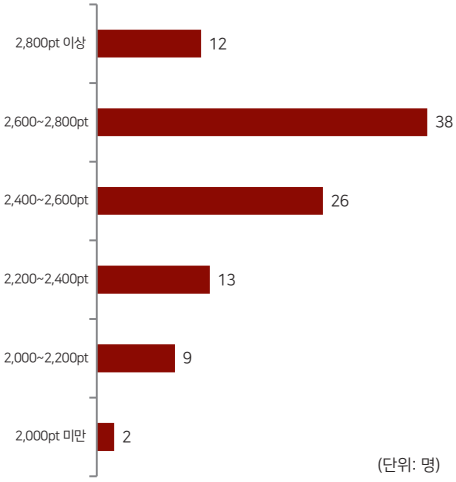

2019 중국시장전망 (상해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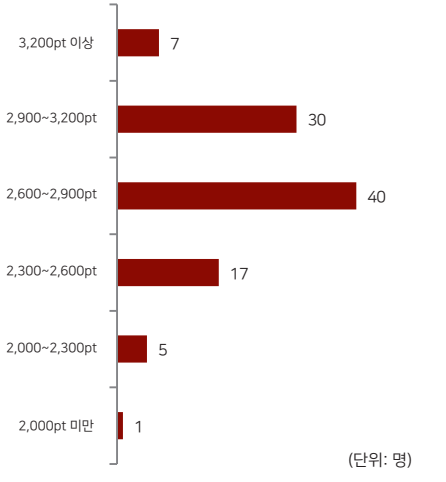

2019년 자산관리전략

2019년 주식운용 기대수익률은?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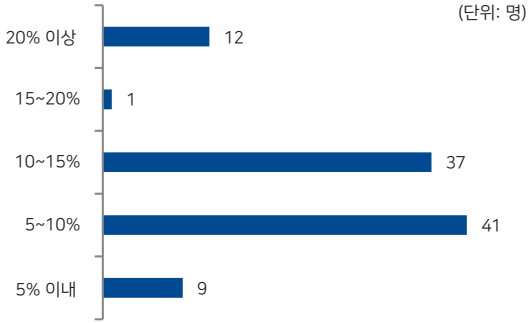

2019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표PB 100명 중 41명이 5~10%라는 보수적인 주식운용 기대수익률을 제시함. 주식운용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10% 이상이 50명, 10% 이하가 50명으로 10%를 기준으로 정확히 반으로 갈렸으며, 불확실한 장세 속에 어느때보다 개별 종목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고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 자산으로 운용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56%였으며, 주식 종목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기본적분석을 꼽았음.

주식종목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기본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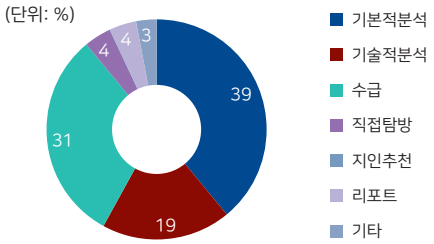

고객자산 주식운용 포트폴리오 비중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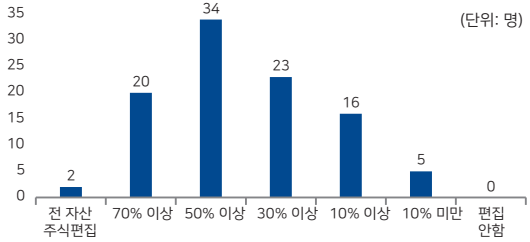

2019년 금융상품 기대수익률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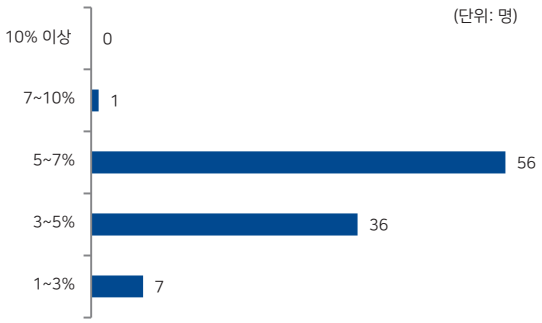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과반수 이상이 5~7%를 선택하였으며, 7% 이상 수익률을 기대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은 1명에 불과하였음. 이는 금융상품 운용 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안정성을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원금보장여부 등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100명 중 57명 선택). 또한 전체 고객자산 중 30% 이상을 금융상품에 편입해 안정적인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 중론이었음(100명 중 74명 선택).

금융상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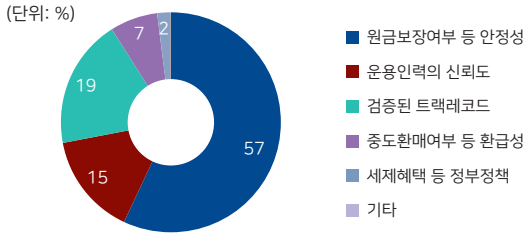

고객자산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비중

3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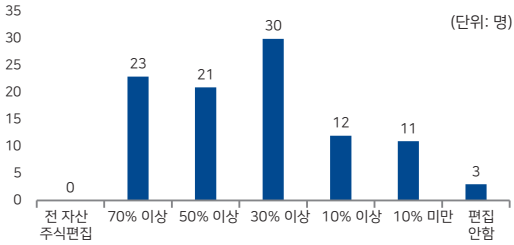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6 유안타증권 PB지원팀
고객지원센터 : 1588-2600
FAX : 02) 3770-5549
E-mail : pension@yuantakorea.com

본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유안타증권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내게시용 서면자료입니다.

유안타증권